

	원격교육지원센터 규정	문서번호		4-1-13	
		제정일		2020. 12. 31.	
		개정일		2022. 02. 18.	
		페이지	1/2	관리 부서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원격교육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.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범위)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원격교육지원 계획, 운영, 평가 및 개선
2. 원격교육지원 스마트 교육 체계 구축 및 개선
3. 원격교육지원 관련 규정 및 위원회 관리 업무
4. 기타 원격교육에 관한 사항

제3조(조직) ① 센터에는 센터장, 운영위원회, 교원, 직원, 조교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센터장은 본 센터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.

③ 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간) ① 대학 원격교육운영에 관한 전반의 사항과 센터 운영의 주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원격수업관리위원회(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, 교무처장과 교수학습연구지원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교수, 직원, 전문가, 학생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비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운영위원회의 기능)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원격교육지원센터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
2. 기타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3. 그 밖의 원격교육 관련 주요 사항

제7조(운영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	원격교육지원센터 규정	문서번호	4-1-13		
		제정일	2020. 12. 31.		
		개정일	2022. 02. 18.		
		페이지	2/2	관리 부서	교무처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